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및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“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”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09 : 2008. 6. 20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기술표준원장

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R-008	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	별첨

별첨 : 1. 개정 전문(KOLAS-R-008)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자기 적합성시험기관 추가 인정기준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09 : 2008. 6. 20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끝.